

변경대비표

1. 펀드명 : 하나UBS 꿈나무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 모투자신탁 추가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 보수 변경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19년 10월 22일

4. 대비표

[집합투자계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추가>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하나UBS 대한민국1호증권모투자신탁 [주식] (이하 "대한민국1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이라 한다)
제 18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2. 아이비리그증권모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수준	2. 아이비리그증권모투자신탁[주식] 및 "대한민국1호증권모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수준
제 39 조(보수)	③(생략) [종류 A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5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5.42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8 [종류 C1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5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11.42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8	③(생략, 현행과 동일) [종류 A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5.42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5 [종류 C1 수익증권]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00 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10.70 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30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5

	<p>[종류 C2 수익증권]</p> <p>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5</p> <p>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10.71</p> <p>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p> <p>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0.18</p> <p>[종류 C3 수익증권]</p> <p>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7.5</p> <p>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10.0</p> <p>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0.4</p> <p>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8</p>	<p>[종류 C2 수익증권]</p> <p>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u>7.00</u></p> <p>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u>10.00</u></p> <p>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u>0.30</u></p> <p>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u>0.15</u></p> <p>[종류 C3 수익증권]</p> <p>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u>7.00</u></p> <p>2.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u>9.30</u></p> <p>3.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 분의 <u>0.30</u></p> <p>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 분의 <u>0.15</u></p>
--	---	--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요약정보	<p>투자목적 및 전략</p> <p>[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style="width: 50%;">모투자신탁 명칭</th> <th>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th> </tr> <tr> <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 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td> <td>(생략)</td> </tr> </table>	모투자신탁 명칭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 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생략)	<p>투자목적 및 전략</p> <p>[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style="width: 50%;">모투자신탁 명칭</th> <th>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th> </tr> <tr> <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 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u>하나 UBS 대한민국 1 호 증권 모투자신탁[주식]</u></td> <td>(생략, 현행과 동일)</td> </tr> </table>	모투자신탁 명칭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 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u>하나 UBS 대한민국 1 호 증권 모투자신탁[주식]</u>	(생략, 현행과 동일)																					
	모투자신탁 명칭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 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생략)																													
모투자신탁 명칭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 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주식] <u>하나 UBS 대한민국 1 호 증권 모투자신탁[주식]</u>	(생략, 현행과 동일)																														
<p>투자비용</p> <p>(생략)</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rowspan="2">클래스 종류</th> <th colspan="3">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연간, %)</th> </tr> <tr> <th>판매 수수료</th> <th>총 보수</th> <th>판매 보수</th> </tr> </thead> <tbody> <tr> <td>(A)</td> <td>납입금액의 0.6%이내</td> <td>1.350</td> <td>0.542</td> </tr> <tr> <td>(C1)</td> <td>없음</td> <td>1.950</td> <td>1.142</td> </tr> </tbody> </table>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연간, %)			판매 수수료	총 보수	판매 보수	(A)	납입금액의 0.6%이내	1.350	0.542	(C1)	없음	1.950	1.142	<p>투자비용</p> <p>(업데이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rowspan="2">클래스 종류</th> <th colspan="3">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연간, %)</th> </tr> <tr> <th>판매 수수료</th> <th>총 보수</th> <th>판매 보수</th> </tr> </thead> <tbody> <tr> <td>(A)</td> <td>납입금액의 0.6%이내</td> <td><u>1.287</u></td> <td>0.542</td> </tr> <tr> <td>(C1)</td> <td>없음</td> <td><u>1.815</u></td> <td><u>1.070</u></td> </tr> </tbody> </table>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연간, %)			판매 수수료	총 보수	판매 보수	(A)	납입금액의 0.6%이내	<u>1.287</u>	0.542	(C1)	없음	<u>1.815</u>	<u>1.070</u>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연간, %)																													
	판매 수수료	총 보수	판매 보수																												
(A)	납입금액의 0.6%이내	1.350	0.542																												
(C1)	없음	1.950	1.142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연간, %)																														
	판매 수수료	총 보수	판매 보수																												
(A)	납입금액의 0.6%이내	<u>1.287</u>	0.542																												
(C1)	없음	<u>1.815</u>	<u>1.070</u>																												
	<p>운용전문인력</p> <p>책임 : 김정표</p>	<p>운용전문인력</p> <p>책임 : <u>이왕섭</u></p>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p>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p> <p>[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p> <p><추가></p>	<p>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p> <p>[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p> <p><u>하나UBS 대한민국1호증권모투자신탁</u></p>

관한 사항		[주식] (CV203)												
제 2 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9년 10월 22일 - 모투자신탁 추가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김정표 → 이왕섭) - 보수 변경												
제2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 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김정표 나. 최근 3 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 (생략)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table border="1" data-bbox="379 1084 874 1234"> <thead> <tr> <th>투자대상</th> <th>투자비율</th> </tr> </thead> <tbody> <tr> <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 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 <td>50% 수준</td> </tr> </tbody> </table> <추가>	투자대상	투자비율	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 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	50% 수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이왕섭 나. 최근 3 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 (업데이트)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table border="1" data-bbox="887 1084 1388 1279"> <thead> <tr> <th>투자대상</th> <th>투자비율</th> </tr> </thead> <tbody> <tr> <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 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증권모 투자신탁[주식]</td> <td>50% 수준</td> </tr> </tbody> </table>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증권모투자신탁 [주식] (별첨 1 참조)	투자대상	투자비율	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 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증권모 투자신탁[주식]	50% 수준				
투자대상	투자비율													
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 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	50% 수준													
투자대상	투자비율													
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 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증권모 투자신탁[주식]	50% 수준													
제 2 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 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 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table border="1" data-bbox="379 1792 874 1977"> <thead> <tr> <th>투자대상</th> <th>투자 비율</th> <th>투자대상 내역</th> </tr> </thead> <tbody> <tr> <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 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 [주식]</td> <td>50% 수준</td> <td>(생략)</td> </tr> </tbody> </table>	투자대상	투자 비율	투자대상 내역	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 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 [주식]	50% 수준	(생략)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 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 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table border="1" data-bbox="887 1792 1388 1977"> <thead> <tr> <th>투자대상</th> <th>투자 비율</th> <th>투자대상 내역</th> </tr> </thead> <tbody> <tr> <td>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 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 [주식]</td> <td>50% 수준</td> <td>(생략, 현행과 동일)</td> </tr> </tbody> </table>	투자대상	투자 비율	투자대상 내역	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 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 [주식]	50% 수준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대상	투자 비율	투자대상 내역												
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 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 [주식]	50% 수준	(생략)												
투자대상	투자 비율	투자대상 내역												
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 스적립식증권모투자신탁 [주식]	50% 수준	(생략, 현행과 동일)												

	<p>나. 모집합투자기구 <추가></p>	<table border="1" data-bbox="895 192 1385 271"> <tr> <td data-bbox="895 192 1193 271">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 증권모투자신탁[주식] </td> <td data-bbox="1193 192 1270 271"></td> <td data-bbox="1270 192 1385 271"></td> </tr> </table> <p>나. 모집합투자기구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증권모투자신탁 [주식] (별첨 2 참조)</p>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 증권모투자신탁[주식]										
<p>제 2 부.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p>	<p>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 모투자신탁에의 투자</p> <table border="1" data-bbox="379 685 876 835"> <thead> <tr> <th data-bbox="379 685 719 734">투자대상</th> <th data-bbox="719 685 876 734">투자비율</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79 734 719 835">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 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td> <td data-bbox="719 734 876 835">50% 수준</td> </tr> </tbody> </table> <p>[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 리] <추가></p>	투자대상	투자비율	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 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	50% 수준	<p>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 모투자신탁에의 투자</p> <table border="1" data-bbox="895 685 1385 882"> <thead> <tr> <th data-bbox="895 685 1235 734">투자대상</th> <th data-bbox="1235 685 1385 734">투자비율</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895 734 1235 882">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 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증권모 투자신탁[주식]</td> <td data-bbox="1235 734 1385 882">50% 수준</td> </tr> </tbody> </table> <p>[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 리]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증권모투자신탁 [주식] (별첨 3 참조)</p>	투자대상	투자비율	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 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증권모 투자신탁[주식]	50% 수준
투자대상	투자비율									
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 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	50% 수준									
투자대상	투자비율									
하나 UBS 아이비리그플러스적 립식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증권모 투자신탁[주식]	50% 수준									
<p>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	<p>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별첨 4 참조>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단위: 1,000 원) (생략)</p>	<p>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별첨 4 참조>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단위: 1,000 원) (업데이트)</p>								
<p>제 4 부 집합투자 기구 관련회사 에 관한 사항</p>	<p>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p>	<p>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p>								

<별첨1>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p><u>하나 UBS 대한</u> <u>민국 1 호증권모</u> <u>투자신탁[주식]</u></p>	<p><u>주요투자대상</u></p>	<p><u>국내주식 60%이상, 채권 40% 이하</u></p>
	<p><u>투자목적</u></p>	<p><u>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u></p>
	<p><u>주요투자전략</u> <u>및 위험관리</u></p>	<p>- <u>업종별 담당 애널리스트들의 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대상 종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다양하게 분산투자</u> - <u>각 섹터내 종목중 가치 평가 시스템(valuation model & system)상 저평가된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u> - <u>거시경제 분석을 바탕으로 한 Top-down 및 개별종목 분석을 바탕으로 한 Bottom-up 접근법을 결합한 자산배분전략 실행</u> - <u>벤치마크를 KOSPI 200 대신 KOSPI를 사용함으로써 대형주 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를 포함한 보다 폭넓은 범위에 투자하여 초과수익 기회의 확대</u></p>

<별첨2>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증권모투자신탁 [주식]

(1)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주식	60%이상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다만,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 투자
2.채권	40%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3.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
5.주식및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6.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총액의 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7.집합투자증권 등	5% 이하 단, 상장지수집합 투자기구는 30% 까지 투자가능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 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8.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9.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10.증권의 차입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1.기타	법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유동성자산	환매 및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2) 투자제한

구분	내용	적용예외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 매수	집합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단기대출 및 환매조건부매수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	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

	<p>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p>	
동일 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p>	
파생상품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p>최초설정 일로부터 1월간</p> <p>적용예외 제외</p>
계열회사 발행 주식 투자	<p>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p>	

<별첨 3>

-하나 UBS 대한민국 1 호증권모투자신탁 [주식]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하는 한편, 잔여 신탁재산으로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 업종별 담당 애널리스트들의 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대상 종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다양하게 분산투자
- 각 섹터내 종목중 가치 평가 시스템(valuation model & system)상 저평가된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2) 자산배분 전략

- 거시경제 분석을 바탕으로 한 Top-down 및 개별종목 분석을 바탕으로 한 Bottom-up 접근법을 결합한 자산배분전략 실행
- 벤치마크를 KOSPI 200 대신 KOSPI를 사용함으로써 대형주 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를 포함한 보다 폭넓은 범위에 투자하여 초과수익 기회의 확대

(3) 비교지수 : KOSPI 수익률 X 100%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KOSPI X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주 2) 이 투자신탁은 적극적 운용을 통하여 비교지수를 초과하는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지수를 단순히 추적하는 인덱스형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주식 등의 매매에 따른 거래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나. 위험관리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다.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주식)에 대부분을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별첨4>

[변경 전]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형 명칭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총 보수	기타비용 주1)	총보수· 비용 주2)	(동종유형 보수) 주3)	증권거래 비용주4)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0.75	0.542	0.040	0.018	1.350	0.002	1.352	1.39	0.428	
C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 체감	0.75	1.142	0.040	0.018	1.950	0.000	1.950	1.59	0.401	
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 체감	0.75	1.071	0.040	0.018	1.879	0.000	1.879	-	0.418	
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 체감	0.75	1.000	0.040	0.018	1.808	0.002	1.810	-	0.431	
지급시기		3개월 후급, 신탁의 전부해지 시					사유 발생시				사유 발생시

[변경 후]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형 명칭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총 보수	기타비용 주1)	총보수· 비용 주2)	(동종유형 보수) 주3)	증권거래 비용주4)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u>0.700</u>	0.542	<u>0.030</u>	<u>0.015</u>	1.287	0.002	1.289	1.38	0.428	
C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 체감	<u>0.700</u>	<u>1.070</u>	<u>0.030</u>	<u>0.015</u>	1.815	0.000	1.815	1.59	0.401	
C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 체감	<u>0.700</u>	<u>1.000</u>	<u>0.030</u>	<u>0.015</u>	1.745	0.000	1.745	-	0.418	
C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 체감	<u>0.700</u>	<u>0.930</u>	<u>0.030</u>	<u>0.015</u>	1.675	0.002	1.677	-	0.431	
지급시기		3개월 후급, 신탁의 전부해지 시					사유 발생시				사유 발생시